

권리 선언 (The Bill of Rights)

권리 선언 서문

1789년 3월 4일 수요일 미국 의회가 뉴욕시에서 최초로 개원하였다.

헌법을 채택할 당시 여러 주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권력의 그릇된 해석이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세한 선언적 및 제한적 조항을 추가해야 하며 또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기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부 설립의 선의의 목적을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된다는 의사가 표명되었다.

의회 개원시 미 상 하원은 양원의 3분의 2가 찬성하여 다음 조항들을 미국헌법의 수정안으로서 여러 주의 주의회에 발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그 조항들의 전체 또는 일부가 상기 주의회의 4분의 3에 의해 비준되면 상기 헌법의 일부로서 전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력을 발휘하는 되는 것이다. 즉,

의회에서 발의한 미국 헌법 추가 조항 및 수정 조항은 본 헌법 제 5조에 따라 여러 주의 주의회에 의해 비준되었다.

수정조항 제 1조 – 의회는 종교를 지정하는 법률 또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되며, 언론의 자유 및 말을 할 자유, 평화적으로 국민들이 집회할 권리, 혹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에게 해당 주의 종교를 강요할 수 없으며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국민을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원하는 바를 글로 표현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평화적으로 서로 집회를 갖고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도록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수정조항 제 2조 – 자유 주(free State)의 보안상의 필요에 의해 올바로 통제된 민병대가 필요하므로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인(“국민”)은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무기를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수정조항 제 3조 – 군인은 평화시에 소유주의 허가 없이 집안에 숙영할 수 없다. 다만 전시에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국민에게 정부요원을 숙영 시키도록 강요할 수 없다.

수정조항 제 4조 – 부당한 수색과 압류로부터 신체, 가옥, 서류 및 자산을 보호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공식 서약 또는 확인 증언으로 뒷받침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수색장소, 체포 또는 압류 대상인 사람이나 사물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국민은 임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어떤 정부기관도 사전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국민의 자산이나 소유물을 조사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영장을 발부 하려면 수색 또는 체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이들 사유에 대해 진실을 말한다는 맹세 하에 서약해야 한다. 또한 영장에는 해당 장소, 사물 또는 사람을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 너무 일반적이거나 애매한 영장은 무효이며 영장에 명시된 조건을 지나치는 조사나 체포는 유효하지 않다.

수정조항 제 5조 – 어느 누구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기소 없이는 사형범죄나 중죄에 대해 해명을 요구당하지 않으며 다만 전시나 공공 재해시 육군이나 해군, 혹은 민병대의 실제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원인은 예외로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기소되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받을 수 없으며, 형사 사건에서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되도록 강요를 받지 않으며,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 자유 또는 자산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보상 없이 개인 자산을 공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군대에 속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대배심(시민으로 구성된)의 기소에 의하지 않고는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없다. 일단 무죄가 판명된 개인을 그 동일 행위에 대해 또 다시 재판할 수 있으며 국민은 형사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되거나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요 받을 수 없다. 국민은 적법한 절차 없이 투옥되거나 자산을 압류 당할 수 없으며 정부는 그 자산에 대한 시장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는 국민의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

수정조항 제 6조 – 모든 형사 사건 기소에 있어서 피의자는 범죄가 발생한 주 및 관할 구역의 공정한 배심원에 의해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구역은 사전에 법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피의자는 기소의 내용과 사유를 알 권리가 있으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을 반대 심문할 권리,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절차를 거칠 권리, 또한 자신의 변호를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재판은 부당하게 연기되거나 비밀리에 시행될 수 없다. 국민을 피의자로 하는 어떠한 형사사건에서도 국민은 공정한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공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해당 주가 “주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일치하는” 판사로 하여금 국민에게 일방적 판결을 내리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을 보장한다). 재판은 범죄가 발생한 주나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국민은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될 수 없다. 자신에게 비밀로 부쳐진 혐의로 국민을 구금할 수 없다. 국민은 자신을 기소한 기소인을 알 권리와 법정에서 이들 증인을 반대 심문할 권리를 갖는다. 국민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을 소환할 권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수정조항 제 7조 – 분쟁의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보통법 소송의 경우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존되어야 하며 배심원이 심리한 어떤 사실도 보통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연방법원에서 재심리를 받을 수 없다.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에도 적용된다. 일단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면 허용된 법적 절차에 의한 경우(가령 상소법원에서 원래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공판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법원에서도 해당 판결을 번복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수정조항 제 8조 – 과도한 보석금 혹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잔인하고 예외적인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보석금, 벌금 및 처벌은 모두 범죄에 적합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잔인하게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수정조항 제 9조 – 헌법에서 특정 권리의 열거를 이유로 국민이 보유한 다른 권리를 부정하거나 경시하도록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권리 선언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권리 이상의 권리를 소유한다.

수정조항 제 10조 – 헌법에 의해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 및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각의 주나 국민에게 부여된다.

미 연방 정부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특정 권한만을 보유한다. 다른 모든 권한은 주 또는 개인에게 속한다.

제9조 및 제10조의 수정조항을 함께 해석하면 연방 정부는 연방 정부에게 부여된 권한만을 갖는 반면 국민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갖는 것으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권리 선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가 절대로 강탈, 박탈 또는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특정한 주요 권리를 기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권리 선언은 국민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정부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오늘날 전개되도록 허용한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바이다.